

원격강좌 운영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23.12.18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원격강좌 운영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원격강좌에 대한 사항 이외에 원격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강좌”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방송·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강좌를 말하며, 원격강좌에는 온라인수업, 원격강의, 가상강의, 전자강의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다만, 강의실 수업의 보조 수단 (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써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원격강좌 교과목”이라 함은 중간·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원격 교육을 목적으로 설계·개발된 학습 내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학습 자원을 의미한다.

제2장 원격강좌의 운영

제3조 (원격강좌 교과목의 학사운영 기준) ① 원격강좌 교과목의 학점인정, 학점당 이수시간 및 수업일수 관련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격강좌 교과목의 폐강, 재수강, 성적평가 기준은 대면수업 교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원격강좌 개설 및 운영) ① 원격강좌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강좌의 구성요건은 <별표1>을 따른다.

구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수자·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수자는 학습 진행 확인 및 피드백 수행 •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과제 수행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자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블렌디드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

- ② 실습시간으로만 구성된 과목의 원격 강좌 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실습과 이론시간이 혼합된 과목일 경우 이론부분만 원격강좌의 형태로 운영 가능하다.
- ③ 원격강좌 콘텐츠는 교수자의 자체 개발 또는 학내 스튜디오 및 녹화시스템을 활용한 강의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본항 전문 개정 2023.12.18.>
- ④ 3항에도 불구하고 교수자는 학생들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 1. 해당 외부 콘텐츠 활용이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는 경우
 - 2. 외부 콘텐츠의 분량이 전체 원격수업 콘텐츠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항 신설 2023.12.18.>

제5조 (원격강좌 출석관리) 원격강좌의 출석관리는 아래 각 호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주차별 강의영상 시청기록(진도)을 활용한 출석체크.
- 2. 주차별 강의내용 관련 간단한 퀴즈, 과제등을 활용한 출석체크.
- 3. (실시간 원격화상강의 시) 호명 등 방법을 활용한 출석체크.
- 4. 그 밖에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방법을 활용한 출석체크.

제6조 (원격강좌 수업진행) ① 원격강좌에 의한 교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교와의 학점교류협약을 통하여 운영하는 교과목 등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원격강좌 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에서는 교무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원격강좌 성적평가) ① 학생의 성적평가(수시평가, 기말고사 등)는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습관리시스템(LMS)등 신뢰성이 인정되는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자료는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원격평가를 실시한 이후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취득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강의 운영을 위한 교수자의 의무) ① 원격강좌 교과목의 담당 교수자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여 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내용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원격강좌 교과목의 담당 교수자는 학습관리시스템(LMS)를 이용하여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팀 프로젝트 등 수업과 관련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 ① 본 대학교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대학공개강의서비스 (Korea Open CourseWare)에 게재 할 수 있다.

- 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한 교수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은 저작권법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 ③ 강의 콘텐츠는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텐츠 제작 시 사용된 저작물(동영상 소스, 사진, 그림, 음원 등)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개발한 제작자에게 있다.

제10조 (원격강좌의 품질관리 및 강의평가) ① 원격강좌의 영상 음질 등 콘텐츠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은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제작자에게 있다.

- ② 원격강좌의 강의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③ 원격강좌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 원격강좌 강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문항은 <강의평가 운영내규>의 문항을 준용하되 강좌 특성에 따라 문항을 변형,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영상 음질 포맷 등 콘텐츠의 품질향상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11조 (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자의 역할)

- ① 원격강좌 교과목 담당 교수자는 원격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콘텐츠의 수정, 보완, 갱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원격강좌 교과목 담당 교수자는 수강생으로부터 화질·음질 등 콘텐츠 품질 개선 요청 시 이를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12조 (품질관리 모니터링 등)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교육 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여 불만족 사항에 대해 개선하고, 그 결과를 원격교육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개설 교과목 수강 학생 및 학습모니터링단 등을 통한 영상 음질 등 콘텐츠 품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 2. 학습자, 교수자 대상 콘텐츠 품질 만족도 조사

제13조 (원격강좌 관리 주관부서) 원격강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교육 콘텐츠의 품질관리 및 제작을 주관한다.
- 2. 교무처는 원격강좌 교과목의 개설승인 및 성적평가를 주관한다.
- 3. 교과목 개설 학부(과)는 원격강좌 교과목의 수업운영 관리를 주관한다.
- 4. 전산정보전략팀은 원격강좌를 위한 서버, 인프라 및 보안관리를 주관한다.

제14조 (정보보호 조치) 전산정보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취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 대학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2. 대학 LMS, 웹서버시스템 시스템 보안점검
3. 대학 학사시스템 인증 우회 취약점 점검

제1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별도로 정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격강좌 교과목 학습시간 구성 기준

강좌 단위	학습동영상 시간	의사소통시간 *
1시간(50분) 이상	주당 최소 30분 (평균 35분 이상)	주당 평균 15분
2시간(100분) 이상	주당 최소 60분 (평균 70분 이상)	주당 평균 30분
3시간(150분) 이상	주당 최소 90분 (평균 105분 이상)	주당 평균 45분

※ 출석체크, 퀴즈, 토론, 질의응답 등 학습자간 또는 학습자-교수자간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으로 전자출결, LMS 등으로 증빙 가능하여야 함.

<별표 2> 원격강좌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 기준

요인	항목	
콘텐츠의 질과 구성	1	콘텐츠의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	콘텐츠가 학습 목표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콘텐츠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자 원격강좌 운영역량	4	교수자는 콘텐츠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
	5	교수자는 학생들의 흥미 및 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6	학습자의 수준 및 특성, 강의 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학습자료(동영상, 이미지, 사운드 등)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7	학습자간, 학습자-교수자간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콘텐츠 구현 기술	8	학습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 및 평가를 한다.
	9	학습자가 강의를 수강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10	학습자가 학습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규정 및 윤리	11	학습자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12	주차별 분량 등 본교 원격강좌 운영 규정에 따라 개발한다.
	13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출처, 저자, 일자 등)를 밝힌다.
	14	윤리적 편견, 폭력적 표현, 개인정보유출 등 교육 콘텐츠로서 부적합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